

일본의 개인정보보호법 2015년 법률 제 57호의 익명가공정보 부분

제 2 조 이 법에서 "개인정보"라 함은 생존하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 1)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있는 성명, 생년월일 기타 기술 등 (문서, 도화 또는 전자적 기록 (전자적 방식 (전자적 방식, 자기 적 방식 그 외인의 지각에 따라서는 인식할 수 없는 방식을 말한다. 다음 항 제호에서 같다)에서 만들어지는 기록을 말한다. 제 18 조 제 항에서 같다)에 기재된 혹은 기록되거나 음성 작동 다른 방법을 사용하여 표현된 일체의 사항 (개인식별부호를 제외한다)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의하여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것 (다른 정보와 용이하게 조합할 수 있으며, 그로 인하여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것이 되는 것을 포함한다)

2) 개인식별부호가 포함됩니다.

2 이 법률에 대해 「"개인식별부호"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글자, 숫자, 기호 기타의 부호 중 정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 1) 특정 개인의 신체의 일부 특징을 전자계산기용으로 제공 번역 한 글자, 숫자, 기호 기타의 부호가 해당 특정 개인을 식별 할 수 있는 것
- 2) 개인에게 제공되는 용역의 이용 또는 개인에게 판매되는 제품의 구입에 관해 할당 또는 개인에게 발급되는 카드 기타 서류에 기재된 혹은 전자적 방식에 의해 기록 된 글자, 숫자, 기호 기타의 부호가 그 이용자 또는 구입자 또는 발급을 받는 사람마다 다른 것이 되도록 할당 또는 기재되어 또는 기록 됨으로써 특정 이용자 또는 구입자 또는 발행을 받을 사람을 식별할 수 있는 것

3 이 법률에서 「"필수 배려 개인정보"라 함은 본인의 인종, 신념, 사회적 신분, 병력, 범죄 경력, 범죄에 의해 피해를 입은 사실 기타 본인에 대한 부당한 차별, 편견 기타 불이익이 생기지 않도록 그 취급에 특히 주의를 요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 등이 포함 된 개인정보를 말한다.

4 이 법에서 "개인정보 데이터베이스 등"이라 함은 개인정보를 포함한 정보의 집합물로서 다음의 것 (사용 방법으로 보아 개인의 권리 이익을 해칠 우려가 적은 것으로 정령으로 정하는 것을 제외한다)를 말한다.

- 1) 특정의 개인정보를 전자 계산기를 이용하여 검색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구성한 것
- 2) 전호로 내거는 것의 외, 특정 개인정보를 쉽게 검색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구성한 것으로서 정령으로 정하는 것

5 이 법에서 "개인정보 취급사업자"라 함은 개인정보 데이터베이스 등을 사업용으로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다음의 사람은 제외한다.

- 1) 국가 기관
- 2) 지방 자치 단체

- 3) 독립행정법인 등 (독립 행정법 인 등의 보유에 관한 법률 (헤세이 15 년 법률 59 호) 제 2 조 제 1 항 에 규정하는 독립행정법인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
- 4) 지방 독립행정법인 (지방 독립 행정 법인 법 (헤세이 15 년 법률 제 118 호) 제 2 조 제 1 항 에 규정하는 지방 독립행정법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
- 6 이 법에서 "개인정보"는 개인정보 데이터베이스 등을 구성하는 개인정보를 말한다.
- 7 이 법에서 "보유 개인 데이터"는 개인정보 취급사업자가 공개 내용의 정정, 추가 또는 삭제, 이용 정지, 삭제 및 제 3 자에게의 제공의 중지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 개인 데이터이며, 그 존재 여부가 밝혀질 것으로 공익 기타의 이익이 침해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또는 일년 이내의 정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삭제하게 되는 것 이외의 것을 말한다.
- 8 이 법률에서 개인정보 "본인"이라 함은 개인정보에 의해 식별되는 특정 개인을 말한다.
- 9 이 법에서 "익명가공정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개인정보의 구분에 따라 해당 각 호에 정하는 조치를 강구하여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도록 개인정보를 가공으로 얻어진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당해 개인정보를 복원할 수 없도록 한 것을 말한다.
 - 1) 제 1 항 제 1 호에 해당하는 개인정보 해당 개인정보에 포함된 기술 등의 일부를 제거 할 (해당 부분의 설명 등을 복원할 수 있는 규칙도 없다 방법으로 다른 기술 등으로 대체를 포함한다).
 - 2) 제 1 항 제 2 호에 해당하는 개인정보 해당 개인정보에 포함 된 개인식별부호의 전부를 제거할 (해당 개인식별부호를 복원할 수 있는 규칙도 없다 방법으로 다른 기술 등에 대체를 포함한다).
- 10 이 법에서 "익명가공정보 취급사업자"라 함은 익명처리정보를 포함한 정보의 집합 물로서 특정 익명가공정보를 전자계산기를 이용하여 검색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구성된 기타 특정 익명가공정보를 쉽게 검색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구성한 것으로서 정령으로 정하는 것 (제 36 조 제 1 항에서 "익명가공정보 데이터베이스 등"이라 한다)을 사업 의용으로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제 5 항 각 호의 자를 제외한다.

第二条 この法律において「個人情報」とは、生存する個人に関する情報であつて、次の各号のいずれかに該当するものをいう。

- 一 当該情報に含まれる氏名、生年月日その他の記述等(文書、図画若しくは電磁的記録(電磁的方式(電子的方式、磁氣的方式その他の知覚によっては認識することができない方式をいう。次項第二号において同じ。))で作られる記録をいう。第十八条第二項において同じ。))に記載され、若しくは記録され、又は音声、動作その他の方法を用いて表された一切の事項(個人識別符号を除く。)をいう。以下同じ。)により特定の個人を識別することができるもの(他の情報と容易に照合することができ、それにより特定の個人を識別することができることとなるものを含む。)

二 個人識別符号が含まれるもの

2 この法律において「個人識別符号」とは、次の各号のいずれかに該当する文字、番号、記号その他の符号のうち、政令で定めるものをいう。

一 特定の個人の身体の一部の特徴を電子計算機の用に供するために変換した文字、番号、記号その他の符号であって、当該特定の個人を識別することができるもの

二 個人に提供される役務の利用若しくは個人に販売される商品の購入に関し割り当てられ、又は個人に発行されるカードその他の書類に記載され、若しくは電磁的方式により記録された文字、番号、記号その他の符号であって、その利用者若しくは購入者又は発行を受ける者ごとに異なるものとなるように割り当てられ、又は記載され、若しくは記録されることにより、特定の利用者若しくは購入者又は発行を受ける者を識別することができるもの

3 この法律において「要配慮個人情報」とは、本人の人種、信条、社会的身分、病歴、犯罪の経歴、犯罪により害を被った事実その他本人に対する不当な差別、偏見その他の不利益が生じないようにその取扱いに特に配慮を要するものとして政令で定める記述等が含まれる個人情報という。

4 この法律において「個人情報データベース等」とは、個人情報を含む情報の集合物であって、次に掲げるもの（利用方法からみて個人の権利利益を害するおそれが少ないものとして政令で定めるものを除く。）をいう。

一 特定の個人情報を電子計算機を用いて検索することができるように体系的に構成したもの

二 前号に掲げるもののほか、特定の個人情報を容易に検索することができるように体系的に構成したものとして政令で定めるもの

5 この法律において「個人情報取扱事業者」とは、個人情報データベース等を事業の用に供している者をいう。ただし、次に掲げる者を除く。

一 国の機関

二 地方公共団体

三 独立行政法人等（[独立行政法人等の保有する個人情報の保護に関する法律](#)（平成十五年法律第五十九号）[第二条第一項](#)に規定する独立行政法人等をいう。以下同じ。）

四 地方独立行政法人（[地方独立行政法人法](#)（平成十五年法律第百十八号）[第二条第一項](#)に規定する地方独立行政法人をいう。以下同じ。）

6 この法律において「個人データ」とは、個人情報データベース等を構成する個人情報をいう。

7 この法律において「保有個人データ」とは、個人情報取扱事業者が、開示、内容の訂正、追加又は削除、利用の停止、消去及び第三者への提供の停止を行うことのできる権限を有する個人データであって、その存否が明らかになることにより公益その他の利益が害されるものとして政令で定めるもの又は一年以内の政令で定める期間以内に消去することとなるもの以外のものをいう。

8 この法律において個人情報について「本人」とは、個人情報によって識別される特定の個人をいう。

9 この法律において「匿名加工情報」とは、次の各号に掲げる個人情報の区分に応じて当該各号に定める措置を講じて特定の個人を識別することができないよう個人情報を加工して得られる個人に関する情報であって、当該個人情報を復元することができないようにしたものをいう。

一 第一項第一号に該当する個人情報

当該個人情報に含まれる記述等の一部を削除すること（当該一部の記述等を復元することのできる規則性を有しない方法により他の記述等に置き換えることを含む。）。

二 第一項第二号に該当する個人情報

当該個人情報に含まれる個人識別符号の全部を削除すること（当該個人識別符号を復元することのできる規則性を有しない方法により他の記述等に置き換えることを含む。）。

10 この法律において「匿名加工情報取扱事業者」とは、匿名加工情報を含む情報の集合物であって、特定の匿名加工情報を電子計算機を用いて検索することができるように体系的に構成したものその他特定の匿名加工情報を容易に検索することができるように体系的に構成したものと政令で定めるもの（第三十六条第一項において「匿名加工情報データベース等」という。）を事業の用に供している者をいう。ただし、第五項各号に掲げる者を除く。

제2절 익명가공정보 취급사업자 등의 의무

(익명가공정보의 작성 등)

제36조 개인정보 취급사업자는 익명가공정보 (익명가공정보 데이터베이스 등을 구성하는 것에 한 한다. 이하 같다)을 만들 때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및 그 작성에 사용하는 개인정보를 복원할 수 없도록 하기 위해 필요한 것으로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규칙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당해 개인정보를 가공해야 한다.

2 개인정보 취급사업자는 익명가공정보를 작성한 때에는 그 작성에 사용된 개인 정보를 삭제한 기술 등 및 개인식별부호 및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한 가공방법에 대한 정보가 유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것으로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규칙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이러한 정보의 안전 관리를 위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3 개인정보 취급사업자는 익명가공정보를 생성할 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익명가공정보에 포함되는 개인정보의 항목을 공표하여야 한다.

4 개인정보 취급사업자는 익명가공정보를 작성하여 당해 익명가공정보를 제3자에게 제

공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제3자에게 제공되는 익명가공정보에 포함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및 그 제공 방법에 대해 공표하는 동시에, 해당 제3자에 대하여 당해 동 정보가 익명가공정보임을 명시해야 한다.

5 개인정보 취급사업자는 익명가공정보를 작성하고 스스로 그 익명가공정보를 취급함에 있어서는 당해 익명가공정보를 만드는데 사용된 개인정보에 관한 본인을 식별하기 위해 해당 익명가공정보 다른 정보와 비교해서는 안 된다.

6 개인정보 취급사업자는 익명가공정보를 생성한 때에는 당해 익명가공정보의 안전 관리를 위해 필요하고 적절한 조치 당해 익명가공정보의 작성 기타 취급에 관한 불만 처리 기타 해당 익명가공정보의 적절한 취급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스스로 취하며 해당 조치의 내용을 공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익명 처리 정보의 제공)

제37조 익명가공정보 취급사업자는 익명가공정보 (스스로 개인정보를 가공하여 만든 것을 제외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제3자에게 제공되는 익명가공정보에 포함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및 그 제공 방법에 대해 공표하는 동시에, 해당 제3자에 대하여 당해 동 정보가 익명가공정보 있다는 뜻을 명시하여야 한다.

(식별 행위의 금지)

제38조 익명가공정보 취급사업자는 익명가공정보를 취급함에 있어서는 당해 익명가공정보를 만드는데 사용된 개인정보에 관한 본인을 식별하기 위해 당해 개인정보에서 삭제된 설명 등이나 개인식별부호 또는 제36조 제1항, 행정기관이 보유하는 개인정보보호법(헤세이 15년 법률 58 번째 호) 제44조의 제1항(동조 제 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독립행정법인등이 보유하는 개인정보보호법 제44조의 제1항(동조 제 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따라 실시 가공 방법에 관한 정보를 취득하거나 당해 익명가공정보를 다른 정보와 비교해서는 안 된다.

(안전 관리 조치 등)

제39조 익명가공정보 취급사업자는 익명처리정보의 안전관리를 위해 필요하고 적절한 조치 익명가공정보의 취급에 관한 불만처리 기타 익명가공정보의 적절한 취급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스스로 강구하고 해당 조치의 내용을 공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第二節 匿名加工情報取扱事業者等の義務

(匿名加工情報の作成等)

第三十六条 個人情報取扱事業者は、匿名加工情報(匿名加工情報データベース等を構成するものに限る。以下同じ。)を作成するときは、特定の個人を識別すること及びその作成に用いる個人情報を復元することができないようにするために必要なものとして個人情報保護委員会規則で定める基準に従い、当該個人情報を加工しなければならない。

2 個人情報取扱事業者は、匿名加工情報を作成したときは、その作成に用いた個人情報から削除した記述等及び個人識別符号並びに前項の規定により行った加工の方法に関する情報の漏えいを防止するために必要なものとして個人情報保護委員会規則で定める基準に従い、これらの情報の安全管理のための措置を講じなければならない。

3 個人情報取扱事業者は、匿名加工情報を作成したときは、個人情報保護委員会規則で定めるところにより、当該匿名加工情報に含まれる個人に関する情報の項目を公表しなければならない。

4 個人情報取扱事業者は、匿名加工情報を作成して当該匿名加工情報を第三者に提供するときは、個人情報保護委員会規則で定めるところにより、あらかじめ、第三者に提供される匿名加工情報に含まれる個人に関する情報の項目及びその提供の方法について公表するとともに、当該第三者に対して、当該提供に係る情報が匿名加工情報である旨を明示しなければならない。

5 個人情報取扱事業者は、匿名加工情報を作成して自ら当該匿名加工情報を取り扱うに当たっては、当該匿名加工情報の作成に用いられた個人情報に係る本人を識別するために、当該匿名加工情報を他の情報と照合してはならない。

6 個人情報取扱事業者は、匿名加工情報を作成したときは、当該匿名加工情報の安全管理のために必要かつ適切な措置、当該匿名加工情報の作成その他の取扱いに関する苦情の処理その他の当該匿名加工情報の適正な取扱いを確保するために必要な措置を自ら講じ、かつ、当該措置の内容を公表するよう努めなければならない。

(匿名加工情報の提供)

第三十七条 匿名加工情報取扱事業者は、匿名加工情報(自ら個人情報を加工して作成したものを除く。以下この節において同じ。)を第三者に提供するときは、個人情報保護委員会規則で定めるところにより、あらかじめ、第三者に提供される匿名加工情報に含まれる個人に関する情報の項目及びその提供の方法について公表するとともに、当該第三者に対して、当該提供に係る情報が匿名加工情報である旨を明示しなければならない。

(識別行為の禁止)

第三十八条 匿名加工情報取扱事業者は、匿名加工情報を取り扱うに当たっては、当該匿名加工情報の作成に用いられた個人情報に係る本人を識別するために、当該個人情報から削除された記述等若しくは個人識別符号若しくは第三十六条第一項、[行政機関の保有する個人情報の保護に関する法律](#)(平成十五年法律第五十八号)[第四十四条の十第一項](#)([同条第二項](#)において準用する場合を含む。)若しくは[独立行政法人等の保有する個人情報の保護に関する法律第四十四条](#)

[の十第一項](#) ([同条第二項](#)において準用する場合を含む。) の規定により行われた加工の方法に関する情報を取得し、又は当該匿名加工情報を他の情報と照合してはならない。

(安全管理措置等)

第三十九条 匿名加工情報取扱事業者は、匿名加工情報の安全管理のために必要かつ適切な措置、匿名加工情報の取扱いに関する苦情の処理その他の匿名加工情報の適正な取扱いを確保するために必要な措置を自ら講じ、かつ、当該措置の内容を公表するよう努めなければならない。